동남지방통계청공고　제2025-267호

[통영] 2025년 2차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 직원 결원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5. 6. 16.
통계청 통영사무소

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지역	계약방법	채용구분	채용인원	채용기간	수당
통영	근로계약	기간제근로자	2명	'25.7.1.~7.31.	1일 73,170원 (표본관리비, 식비 별도 지급)

※ 기관의 사정에 따라 채용인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, 부서내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
2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 담당업무
어업부문 경상조사 등	○ 어업부문 경상조사, 연간 및 특별조사 ○ 조사대상처 관리 및 조사업무 ○ 현장(방문)조사 및 조사표 작성 ○ 조사표류 입력, 내용검토 및 보완 등 ○ 그 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업무

※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요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.

3 선발방법

□ 1차 전형

○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응모자의 모집 제한 여부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○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평가하여 1차 전형 합격자 선정

※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※ 면접 미참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□ 2차 전형

○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후 최종합격자 선정

○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기준

○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
○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
○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○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
	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

5점	10점
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처 훈령)제41조의3(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(이하 '가점합격자'라 한다)에서 제외한다.

③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'선발예정인원'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.

④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,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
⑤ 제4항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규정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4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□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
□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
□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(해당자에 한함)

□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(해당자에 한함)

※ 저소득층의 범위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
※ 다자녀보육가구: 20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
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
□ 「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(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

□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
□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
□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

□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
5 전형일정

□ 채용공고: 2025. 6. 16.(월)~2025. 6. 23.(월) 18:00

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5. 6. 25.(수) 17:00

□ 면접일시 및 장소: 2025. 6. 27.(금) 9:30~, 통계청 통영사무소

□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6. 27.(금) 17:00

○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(http://kostat.go.kr) 채용정보에 공고

※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 지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: 2025. 6. 16.(월)~2025. 6. 23.(월) 18시까지

□ 접수방법

○ 방문접수: 평일 09:00～18:00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
○ 우편 및 이메일 접수 :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○ Fax를 통한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

○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□ 접수처

기 관 명	담당자	주 소	연 락 처
통계청 통영사무소	이세영	경남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355 2층 경제사회통계팀	전화: 055-640-0712 이메일: lsy514@korea.kr

7 제출서류

□ [필수] 응시원서 1부

□ [필수] 자기소개서 1부

□ [필수]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

□ [필수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□ [해당자] 행정정보 공용이용 사전동의서 1부

□ [해당자] 자격증명서 1부

□ [해당자]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□ [해당자]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
※ 필요 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추가 가능

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 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8 유의사항

☐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
☐ **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**함

☐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
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
☐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
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☐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
☐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안내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[필수]

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

부 서	통영사무소	업무명	어업부문 경상조사 등	지원분야	기간제근로자
성 명			휴대폰번호		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작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■ **과거 경력 관련 내용 등**

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

■**어업부분 경상조사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**

■ **지원동기 및 포부 등**

-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청 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

[필수]

(채용 전)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통계청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2조에 따라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□ [필수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	수집목적	보유기간	
공통	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휴대전화, 전자우편)	**채용절차 진행, 본인확인, 이중취업여부 확인, 경력증명서 발급용 기록관리** 채용요건(자격·경력·학위 등), 채용우대 확인	미채용자	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해당자	자격·경력·학위·저소득·다자녀·북한이탈주민·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대상자)·비자종류(외국인)		채용자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□ 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
<해당자>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미채용자	「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		채용자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□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2025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통계청 통영사무소장 귀하

[해당자만 제출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대상	행정정보명	이용 대상	행정정보명
□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	□	장애인증명서
□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	□	주민등록표 등·초본(다자녀 양육자)
□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	□	취업지원대상자증명
□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□	한부모가족증명서

* 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체크(☑)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주민등록번호	-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 :